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30,993,109	69,929,793
일반회계	1,975,194,483	59,255,834
특별회계	355,798,626	10,673,959
공기업특별회계	264,150,132	7,924,5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2,550,138	3,076,50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1,599,994	4,848,000
기타특별회계	91,648,494	2,749,45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138,036	244,141
수질개선특별회계	10,837,751	325,13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7,902,649	537,079
기반시설특별회계	123,162	3,695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2,694	1,58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9,864	1,19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6,646	12,199
주택사업특별회계	239	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2,138,281	1,564,148
지하수특별회계	1,520,772	45,623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488,400	14,65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146,31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4,000,000천원으로 한다.